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 논의: 현행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이현민*

[목 차]

- | | |
|------------------------|------------------------------|
| I. 서론 | 2. 노인학대 방지 대책 방안 |
| II. 본론 | 3.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의 내용 및 유사법률 비교 |
|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배경 및 역할 | III. 결론 |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사회적 이슈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각 나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노인빈곤, 노인자살,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우울증, 역할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노인학대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개정,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을 분석하고 유사사업 법률과 비교를 통해 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노인보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I.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가기에 노인의 인권은 노인만을 위한 혜택,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기보단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사회적 이슈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각 나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노인빈곤, 노인자살,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우울증, 역할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모든 노인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인문제의 극단적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수성(친족이 70%)¹⁾, 가정사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등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 파장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I. 본론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배경 및 역할

UN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²⁾이 채택하였으며, 노인도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노년기를 보내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원문10항).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10면 참조

2) <http://www.unescap.org/ageing-asia/ko/about-mipaa>(2016.10.28.)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3가지 방향 :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우리나라는 노인권리옹호 및 노인생활지원을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에 따르면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른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노인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참여 기회의 보장 등을 법으로 명시하여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인권규범의 영향으로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노인학대 문제의 접근을 민간(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이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 1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0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안과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의 범주를 넘어선 노인 인권적 관점에서 학대와 폭력을 다루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 노인학대 방지 대책 방안

2014년 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① 지역사회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②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③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④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이다.³⁾

그 세부내용으로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다.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9.9%로 6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사례는 1

3)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94707(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집중 인터뷰(2014.11.7.)(2016.10.28.))

4)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41138130387(수도권 투데이 인터뷰

만 여 건으로 전체 발생의 1.6%만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발생율과 신고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 경로당(63천여개)을 ‘학대노인지킴이센터’로 지정하고,⁵⁾ 노인일자리 ‘실버스마일 사업단’⁶⁾을 재능나눔형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학대,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로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정서적학대는 매년 노인학대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정서적학대는 학대가 신고 된다 하더라도 증명하기 어려우며, 모든 학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기에 정서적학대 단계에서 사례를 조기에 신속히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전체 노인학대 발생을 억제하고 노인학대 예방정책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직군확대, 신고의무자 신고 미이행 과태료 상향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핵심내용이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이다.

2011년 복권기금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16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설치되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분리조치가 필요하거나 신체적·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을 최대 4개월(기본 3개월) 기간 동안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쉼터 퇴소 이후 원가정 복귀 등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노인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모시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에 지정된(15.4.1) 52개 양로원으로 전원조치를 하고 있다.⁷⁾ 또한 학대피해노인과 행위자의 심리·상담

(2016.6.14.) (2016.10.28.))

5)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70149>(2015.1.7.)(2016.10.28.)

6) 실버스마일 사업단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예방 교육 진행과 학대받는 노인을 발굴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공원, 지하철 등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진행

7)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5835(2015.3.31.)(2016.10.28.)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담원 자격 기준에 정신 보건전문요원을 추가하였으며, 노인학대 행위자 처벌도 강화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9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⁸⁾되었다.

넷째,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이다.

시설 내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의의료복지시설 급증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설 내 학대는 가정 내 학대에 비해 종사자에 의한 조직적 은폐가 가능하고 학대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사업(구 옴부즈맨사업)’을 확대하여 2016년 현재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20%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⁹⁾ 또한 노인관련기관¹⁰⁾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이 주요내용이다.

이처럼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신설하거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앞둔 개정 법률을 분석하고 유사사업 법률과 비교를 통해 노인보호사업의 현재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미래를 살펴보고자

8) 제55조의3제1호에 의거,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음

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5) 참조

10) 노인관련기관 :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와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한다.

3.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의 내용 및 유사법률 비교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정의는 노인학대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행위자를 제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거시적인 노인학대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한 조항은 제39조의9¹¹⁾ 금지행위로 신체적학대·성적학대·유기·방임·경제적 학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서적학대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유사사업(아동학대, 장애인학대)¹²⁾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정서적학대가 포함되어 정서적 학대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최근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대부분 형법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행위자를 보호자로 한정하였으며, 대상노인의 연령도 65세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¹³⁾ 이러한 법 개정은 노인학대를 처벌의 대상인 범죄와 인권적 측면의 비(悲)범죄로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개입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1) 제39조의9(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2)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6호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참조

2) 노인학대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리고 UN에 등록된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에서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지정하였으며,¹⁴⁾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15일을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제6조제4항)¹⁵⁾하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는 의무를 두도록 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제6조의2)¹⁶⁾.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고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현실을 인정함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즉 노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피해자의 가해자 감싸기 등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신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기에 전체 노인학대발생의 1.6%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고 그 중 30%정도가 학대로 판정되는 현실을 묵인할 수 없는 것이다.¹⁷⁾

3)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의 보호를 위한 공적체계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과 노인권의보호를 위한 공적체계는 노인보

14)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713000035>(2016.7.12.)(2016.10.28.)

15) 제6조제4항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거,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함

16) 제6조의2(홍보영상이 제작·배포·송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2조제3호각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음

1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9면 참조

호전문기관이 유일하며(제39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아동·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되는 점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과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¹⁸⁾ 운영을 들 수 있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기관의 전문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정부부처나 대중이 기대하는 기관의 역할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상담

최근 긴급전화번호 통합으로 인해 노인학대상담은 비응급성 민원전화 110으로 통합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법률에 긴급전화의 설치근거가(제39조의4¹⁹⁾)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110콜센터는 민간 콜센터 전문업체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초기대응(상담)과 상담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노인학대 상담에 적합한 형태로 볼 수 없다. 특히 상담원의 전문성에 따라 전체 노인학대 상담 등 사례관리의 방향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²⁰⁾는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직군이 추가되어 총 14

18)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법률, 의료, 학계,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

20)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군의 특성상 학대피해노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타 직군 종사자)보다 높음, 최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외장,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가 신고의무자

개 직군으로 확대되었지만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예방교육²¹⁾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신고의무자의 10% 내외만 교육이 실시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신고의무자의 인식개선과 적극적 개입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시 과태료를 상향조정²²⁾하였지만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²³⁾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제39조의7제7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는 공무의 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종사자들은 개인정보처리의 민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제39조의12), 이를 어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양형기준이 상향되었다²⁴⁾.

경찰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직업 특성상 노인학대 사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법률(아동복지법²⁵⁾)에서도 사법경찰관리는 직무

로 추가되었음

- 21) 제39조의6제4항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22)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되었음
- 23)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음
- 24) 제57조제1항제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음
- 25)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련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도 제39조의15 조항이 신설되어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찰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관점에서 개입하도록 한다면 학대의 재범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된 법률 중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조항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39조의5제2항제3호·제7호에 의거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과 재발방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한 개입에 강제성이 없고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권한 밖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신설된 법안도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행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더욱 치밀하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3)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한 조치

최근에 신설된 법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²⁶⁾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은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시설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아동복

26)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야 하며,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같은 절차로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특히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종사자를 해임할 수 있음

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관련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은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은 제39조의9 금지행위로 제60조 양벌규정²⁷⁾의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과 처벌을 받은 개인에 대해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을 공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표의 절차와 방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면, 인권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입소노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학대이 개연성이 낮은 시설의 선택과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내 학대예방의 마지막 조치로 59조의2 가중처벌이 신설되어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일반인들이 노인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결론

이처럼 노인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노인학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

27) 제6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를 행하여 처벌을 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다. 즉 학대피해노인과 행위자의 관계는 대부분 친족이기 때문에 피해노인은 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것이 노인학대 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처벌중심의 법률강화는 오히려 피해노인이 행위자 보호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노인학대 은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든 내 자식이 전과자가 되거나 폐륜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기에 이러한 부모마음이 반영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명목적 처벌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도울 수 있고,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것이다.

또한 피해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와는 다르게 사례개입 전반에 걸쳐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진다. 피해노인의 결정이 사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상담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도 담당자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강압적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노인학대 현장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로 고민하는 상담원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처럼 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사회복지사(상담원)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더욱 구체적으로 촘촘히 개발되고 타 법률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택의 폭이 넓은 복지서비스가 준비된 상황에서 그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구구조의 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수록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시설 내 노인학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과 행정처분이 노인복지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 근거²⁸⁾가 마련되어 있어 가정 내 노인학대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상이한 법률에 구분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노인학대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 즉, 노인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노인학대행위자의 강제개입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적합한 보호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6호·제3항제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2

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노인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아들, 배우자, 딸 등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부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행위자와 피해자를 별도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입법 도입을 통해 가정내 학대 뿐 아니라 시설내 학대와 학대피해노인의 지원과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8. 1. 10. 심사일: 2018. 1. 17. 게재확정일: 2018. 1. 29.

■ 참고 문헌 ■

- 데이터뉴스 '전국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 운영한다', 2015.1.7.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70149>
-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한국),
<http://www.unescap.org/ageing-asia/ko/about-mipaa>. 2016.12.1.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협운영과(2015),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5.
- 의학신문, '학대피해 노인 양로원 생긴다', 2015.3.31.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5835
- ktv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인터뷰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집중 인터뷰]",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94707
- ytn, "[투데이인터뷰] 노인 64만 명이 학대경험, "가족문제 아닌 사회문제"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41138130387. 2016.6.14.
- 아동복지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99&efYd=20170726>)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323&efYd=20170915#0000>)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5&efYd=20170603#000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5).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Abstract]

Discussion on Direction of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Focused on Current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Lee, Hyeon-min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Aging became a social issue already, and i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Governments in each country handle the crisis as major policy tasks of governments in each country. Especially, Korea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aging countries and new crisis that concerned with old aged persons like elder poverty, elder suicide, alone living elder, elder depression have arisen. In this study, throughout the examination of elder abuse prevention policy and revised elder welfare law, it is proposed the direction of elder protection services.

■ Keywords: old aged persons, elder abuse prevention policy, revised elder welfare law